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
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해

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자치구 심의 사항의 정합성을 맞추고,
본 조례에서 인용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
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, 학교이적지,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관련
인용 조문들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